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6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9. 5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겸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임이사의 겸직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“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(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)를 할 수 없다.”로 함.(안 제15조제2항)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(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)를 할 수 없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5조(겸직제한)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15조(겸직제한)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</p> <p>② <u>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15조(겸직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(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)를 할 수 없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(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)를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겸직제한)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15조(겸직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<u>거래(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)를 할 수 없다.</u></p>